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9 선고 2021가합120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0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9. 7. 26. 접수 제79247호로 경로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